

CHICAGO BOARD OF TRADE 제재조치 공지

사건 번호: CBOT 15-0230-BC

비회원: Wen-Hsiung Cheng

관련 규정: Rule 432. (“일반 위반”) (부분 발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 L. (1) 정당하게 소집된 청문회, 거래소 직원과 예정된 면담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사회, 직원 또는 조사위원회 및 청문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

Rule 575. 교란 행위 금지(부분 발체):

모든 주문은 진실한 거래를 실행할 목적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소에 전달되는 기타 메시지(non-actionable message)는 합법적 목적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입력되어야 한다.

- A. 누구든지 주문을 집행 전에 취소하거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정정할 의도를 가지고 해당 주문을 입력하거나 입력을 야기하면 안 된다.

검토 결과:

2017년 6월 28일 CBOT 예비조사위원회(Probable Cause Committee, “PCC”) 소위원회는 비회원인 Wen-Hsiung Cheng (“Cheng”)이 2014년 10월 1일과 2015년 5월 20일 사이에 정규 개장 전 거래시간에 Globex의 귀리 및 쌀(“쌀”) 선물시장에서 입력한 주문은 진실한 거래를 실행할 목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지 않았고, 일반에 게시되는 예상 시초가(Indicative Opening Price, “IOP”)의 급등락을 야기했으며, Cheng이 관련 조사를 위한 Market Regulation 부서의 예정된 면담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혐의에 근거하여 CBOT Rule 432.L. 및 575.A.를 위반했다고 심의했다.

2017년 10월 4일 CBOT 영업행위규제위원회(“BCC”)의 청문소위원회 의장은 Cheng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추가로 청문소위원회 의장은 혐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한 Cheng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해명 기회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CBOT Rule 407.C.에 따라 2017년 10월 18일 BCC 소위원회("Panel")에 제재심의회가 열렸다. 소위원회는 Cheng이 인정된 혐의 내용을 실행했다고 확인했다.

제재 내용:

관련 기록과 Panel의 검토 결과 및 판단에 근거하여 Panel은 Cheng에게 벌금 \$50,000를 부과하고 5년간 (1) CME그룹의 모든 거래소에서 회원권 및 특권, (2) CME Group 제 거래소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CME Group 거래 플로어, 전산거래 및 청산 플랫폼에 대한 직간접적 접근 및 이용; (3) 브로커 협회, 보증 중개 브로커(guaranteed introducing broker), CME그룹의 제 거래소의 회원(Rule 400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또는 그 회원의 관계인과 연계, 이들에 의한 고용 혹은 이들과의 제휴를 금지하였다.

효력발생일:

2017년 11월 3일